



서대문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신청 수리 (주식회사 피투피시스템즈)

1. 건설관리과-22447(2014.12.0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구 관내 소재 법인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등록신청이 있어 동법 9조, 동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등록하는 자의 결격사유 유무를 관련기관에 조회한 결과,

3.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 처리하고 동법 제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처리내역

업체명	업종 및 등록번호	대표자 및 법인등록번호	영업소재지	등록일자	비 고
(주)피투피 시스템즈	실내건축공사업 서대문 14-01-03	김 윤 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10-1	2014.12.08	

나. 조치사항

1) 면허세 부과 : 세무2과

2) 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 확인 (주택법 제68조, 자본금의 1/1,000)

4. 아울러 위 등록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건설업 관리시스템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 1. 건설업등록사항 적격여부 검토보고서 1부.

2. 공고문 1부.

3.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 (별도). 끝.

주무관 **최예운** 공공용지팀장 **정경미**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안전건설교통국장 ^{12/09}**이명균**

협조자 주무관 **김오녀** 규제개혁팀장 **김정현**

시행 건설관리과-22468 () 접수 ()

우 120-703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서대문구청 6층 건설관리과 / <http://www.sdm.go.kr>

전화 02)330-8762 /전송 02-330-1648 / 부분공개